

청주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379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6. 15 선고 2022나5140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0가단37966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김용호

피고1. F

2. G

3. H

4. I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변론 종결 2022. 7. 8.

판결 선고 2022. 8. 12.

주 문

1. J과 피고 H 사이에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H은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48,000,000원의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7,952,405원 부분을, 원고 B에게 8,800,951원 부분을, 원고 C에게 8,651,368원 부분을, 원고 D에게 11,531,531원 부분을, 원고 E에게 11,063,742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들의 피고 F, G,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G,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H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① J과, 피고 F 사이에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8. 체결된, 피고 G 사이에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피고 I 사이에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②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고 F은 240,000,000원의, 피고 G은 12,000,000원의, 피고 I는 150,000,000원의 각 배당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J은 2016년부터 청주지역 일대에서 수십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계주였는데 2019. 8월경 파계하고 도주하였다. 원고들은 J이 조직한 8개의 낙찰계에 가입했던 계원들이다. 나. 원고들이 J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계금은 원고 A이 73,100,000원, 원고 B가 80,900,000원, 원고 C이 79,525,000원, 원고 D이 106,000,000원, 원고 E이 101,700,000원이다(합계 441,225,000원).

다. J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주문 제1항 기재, 청구취지 ①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21. 11. 9. 위 법원은 피고 F에게 240,000,000원, 피고 G에게 12,000,000원, 피고 H에게 48,000,000원, 피고 I에게 15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마. J과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J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각 배당금 채권을 원고들에게1) 양도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 G, I에 대한 청구 판단

J이 청주지역에서 낙찰계 수십 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파계한 사실, 원고들이 J이 조직한 낙찰계에 가입했던 계원들인 사실(위 1.의 가.항)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G, I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 원고들이 J에 대하여 과연 그 각 주장과 같은 계금 채권을 갖고 있는지(위 1.의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각 원고별 채권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시기, 액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 G, I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판단

원고들의 위 1.항 기재 청구원인 주장 사실 중 피고 H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H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J과 피고 H이 별지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H은 청주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 중 원고 A에게 7,952,405원(= 48,000,000원 × 73,100,000원/441,225,000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부분을, 원고 B에게 8,800,951원(= 48,000,000원 × 80,900,000원/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C에게 8,651,368원(= 48,000,000원 × 79,525,000원/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D에게 11,531,531원(= 48,000,000원 × 106,000,000원/441,225,000원) 부분을, 원고 E에게 11,063,742원(= 48,000,000원 × 101,700,000원/441,225,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현룡

별지

1)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배당금 채권을 그냥 '원고들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바, 피고별 각 배당금 채권을 원고 5인의 피보전채권액 안분비율에 따라 각 5개씩(총 20개)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취지의 불특정(각 원고별로 각 피고에 대하여 양도를 구하는 각 채권 분할금액이 특정되지 않음)으로 보아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게다가 원고 A, C, E의 경우는 당초 소장에서 주장한 각 채권액이 2021.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변경(증감)되었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